

議案番號	39
------	----

題目：'94年度豫備費支出承認(案)

提出年月日：1995年 10月 日

提出者：大田廣城市長

### 1. 제안사유

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 구하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○ 예비비 지출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회계별	예산액	지출 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	사유	
계	11,090	2,004	1,482	355	167		
일반회계	4,723	1,349	847	355	147	산불진화장비구입등	
특별 회 계	소계	6,367	655	635	0	20	
	주택사업	2,499	100	99	0	1	대출금 상환
	도시교통	1,138	82	78	0	4	버스전용차선제실시 비용
	상수도업 사	2,730	473	458	0	15	상수도본부 청사신 축에 따른 입차료등

### 3. 본 문

○ 별첨 1994년도 결산서 (안) 내역과 같음

< 별 책 >

- (1)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(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)
- (2) 199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

[ 관 련 법 조 문 ]

○ 지방자치법 제 120조 제2항(예비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